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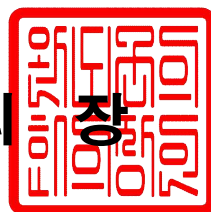
완도군의회 공고 제2023 - 39호

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5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성규 의원
3. 제정이유

-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,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신설(안 제6조의 2)
- 복무 등 정비, 신설(안 제17조 제1항, 안 제17조 제4항)
 -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합숙소 및 인권보호 조치 신설(안 제19조의 2, 안 제19조의 3)
- 징계 신설(안 제27조 1항 제3호~제9호)
-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정비(안 제28조)

5. 관련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10. 5. ~ 2023. 10. 10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 1부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)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,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,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,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2.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3.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

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협의회 설립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,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.

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단장 및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 만약,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합숙소) ① 단원은 출·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.

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.

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,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규칙의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9조의3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
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
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
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
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, 횡령·배임, 회계 부정, 직권남용,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을 일으킨 경우
4.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를 일으킨 경우
5. 폭력·성폭력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) 및 「남녀고용평등법」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,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른 집단따돌림을 주동한 경우
6.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을 행한 경우

7.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경우
8. 대회 부정 출전·참가,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
9.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준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
제28조제1항 중 “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”을 “해고·정직·감봉·견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견책은 다음연도 등급조정”을 “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”으로, “상향조정”을 “상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파면 또는 해임된”을 “파면 또는 해고된”으로 한다.

-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.
- ③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하고 출근을 정지시키며,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④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/10 한도(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/2한도)내에서 급여를 감한다.
- ⑤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.
-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.
- ⑦ 파면 또는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.

별표 2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2(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)</u></p> <p><u>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,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.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,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,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2.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</u> <u>3.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</u>

제17조(복무 등) ① 단원의 근무
시간은 「완도군 지방공무원 복
무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단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
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
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
히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한 사
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
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협의회 조직 및 운
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
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협회의 설립, 가입 범위,
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
항,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
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
다.

제17조(복무 등) ① 단원의 근무
시간은 단원과의 개별 근로계약
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단장 및 지도자는 훈련계획
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수
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
공지하여야 한다. 만약, 수립된
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
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

<신 설>

<신 설>

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(합숙소) ① 단원은 출·

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
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.

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
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
이용할 수 있으며, 단원에게 합
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.

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
경우,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
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
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
하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
규칙의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
영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
다.

제19조의3(인권보호 조치 등) ①

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
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
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
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
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28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① 징계는 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으로 구분한다.

② 파면은 퇴직금을 2분의 1을 줄인다.

비리를 일으킨 경우

5. 폭력·성폭력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) 및 「남녀고용평등법」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,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른 집단따돌림을 주동한 경우

6.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을 행한 경우

7.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, 음주 소란 행위를 한 경우

8. 대회 부정 출전·참가,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

9.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준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① -
---- 해고·정직·감봉·견책
-----.

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.

③ 해임은 퇴직금을 4분의 1을 줄인다.

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고,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.

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고,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.

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.

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.

(별표 2)

연봉의 심의범위(제11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직책	등급	연봉		비고
		하한액	상한액	
지도자	A급	48,000	53,000	
	B급	43,000	48,000	
	C급	38,000	43,000	
선수	S급	48,000	53,000	
	A급	43,000	48,000	
	B급	38,000	43,000	
	C급	33,000	38,000	

③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하고 출근을 정지시키며,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
④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/10 한도(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/2한도)내에서 급여를 감한다.

⑤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.

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---- 상향-----.

⑦ 파면 또는 해고된 -----.

(별표 2)

연봉의 심의범위(제11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직책	등급	연봉		비고
		하한액	상한액	
지도자	A급	48,000	53,000	
	B급	43,000	48,000	
	C급	38,000	43,000	
선수	S급	48,000	70,000	
	A급	43,000	48,000	
	B급	38,000	43,000	
	C급	33,000	38,000	

	D급	28,000	33,000
--	----	--------	--------

(별표 5)

포상금의 지급기준(제26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금(1위)	은(2위)	동(3위)	비고
올림픽게임	7,000	5,000	3,000	보상금 지급횟수는 연 5회로 제한
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	3,000	2,000	1,000	
기타국제대회 및 전국체전	1,000	700	500	
전국 체육대회 (전국체전제외)	700	500	300	
그 외 대회	500	300	200	

※ 지급대상 :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(전국대회 이상을 적용)

※ 지급방법

- 선수는 획득한 성적 중 최고의 성적으로 지급
- 지도자는 최고성적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

	D급	28,000	33,000
--	----	--------	--------

(별표 5)

포상금의 지급기준(제26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금(1위)	은(2위)	동(3위)	비고
올림픽게임	7,000	5,000	3,000	보상금 지급횟수는 연 5회로 제한
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	3,000	2,000	1,000	
기타국제대회 및 전국체전	1,000	700	500	
전국 체육대회 (전국체전제외)	700	500	300	
그 외 대회	500	300	200	

※ 지급대상 :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(전국대회 이상을 적용)

※ 지급방법

- 선수는 획득한 성적 중 최고의 성적으로 지급한다. 단, 전국체전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지급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전액 지급하고, 나머지 종목은 100분의 50만 지급한다.
- 지도자는 최고성적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.

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7.>

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, 2012. 2. 17.>
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